

#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면제 안내

- ❖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 된 경우 의무면제 신고
- ❖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함.

## □ 개 요

- 근거 : 공직자윤리법 제11조(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)
- 대상 :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
-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간
  -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, 전직 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, 1년 후 다시 신분변동 발생월에 1년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
  - ※ 매월 1일에 의무면제자가 된 자는 등록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까지 재산신고
- 예) 2017.2.20.일자로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
  - 1차 의무면제 신고 : 2017.2.20. 기준으로 2017.4.30.일까지 1차 재산변동 신고
  - 2차 의무면제 신고 : 2018.2.20. 기준으로 2018.4.30.일까지 2차 재산변동 신고

## □ 작성방법

-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peti.go.kr>)에 접속하여 재산신고
- 준 비 물 :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

## □ 기타사항

- 의무면제자가 된 날(1년 후 같은 날)로부터 1개월 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, 『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』를 의무면제자가 된 날 다음 달의 15일까지(매월 1일 의무면제자가 된 자는 그 달 15일 까지) 제출하면 재산등록 신고 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
- 재산등록 의무부서 근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의무면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, 계속 재산등록 시 재산등록 처분기준에 의거 처리